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관광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두레 사업 등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관광진흥법」이 개정(2023.6.20. 공포, 2023.12.21.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주민 주도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전문인력 및 주민사업체에 대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의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전담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41조의7 신설).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관련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7부터 제41조의13까지를 각각 제41조의8부터 제41조의14까지로 하고, 제41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7(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① 법 제48조제4항제6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 및 지역자원의 연계·활용을 바탕으로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지역관광 관련 전문인력 발굴·육성
 2. 교육·홍보 및 정보 제공
 3. 지역 내 공공시설 및 유휴공간 활용 지원
 4.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콘텐츠 개발
 5.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사업체의 발굴, 육성 및 지원
 6.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모니터링 및 평가
 7. 그 밖에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전문인력, 주민사업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의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41조의7(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① 법 제48조제4항제6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 및 지역자원의 연계·활용을 바탕으로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u> <u>1. 지역관광 관련 전문인력 발굴·육성</u> <u>2. 교육·홍보 및 정보 제공</u> <u>3. 지역 내 공공시설 및 유휴공간 활용 지원</u> <u>4.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콘텐츠 개발</u> <u>5.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사업체의 발굴, 육성 및 지원</u> <u>6.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모니터링 및 평가</u> <u>7. 그 밖에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u> <u>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u>

<u>제41조의7</u> ~ <u>제41조의13</u> (생략)	<u>른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전문 인력, 주민사업체에 대하여 행 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 다.</u> <u>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실 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 의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u> <u>④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u> <u>제41조의8 ~ 제41조의14</u> (현행 제41조의7부터 제41조의13까지 와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연 락 처	(044) 203 - 2863